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<br>이름:<br>법무법인 이름:<br>거리 주소:<br>시:<br>주: 우편번호:<br>전화번호:<br>팩스번호:<br>이메일 주소:<br>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(이름): | 주 변호사 등록번호: | 법원용<br><br>정보 제공 전용<br><br>법원에 제출하지<br>마십시오 |
|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, 소재 카운티:<br>거리 주소:<br>우편 주소:<br>시 및 우편번호:<br>지원 이름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인(각 신청인의 이름):<br><br>성 정체성에 부합하기 위한 이름 변경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유소명명령—성 정체성에 부합하기 위한 이름 변경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사건 번호:<br>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|

유의사항: 본 양식은 본 신청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제기되었고, 해당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 전원의 서명이 본 신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. 신청서와 본 사유소명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13.10조, 제414.10조, 제415.10조 또는 제415.40조에 따라,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부모에게 법원이 해당 명령을 내린 날부터 4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.

모든 이해관계인 귀하:

1. 신청인은(이름):  
다음과 같은 이름 변경 판결을 구합니다.

본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였으며

현재 법적 성명

변경 후 법적 성명

→

2. 법원은 상기에 기재된 이름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6주 이내에 그 사유를 포함한 서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령합니다. 서면 이의신청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,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79.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6주가 경과한 후 심리 없이 해당 신청을 인용합니다.
3. 심리기일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고, 이름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. 이름 변경이 해당 개인의 실제 성 정체성이나 출생 시 정해진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이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(민사소송법 § 1277.5(b) 참조.)

날짜:

사법관